

예 산 총 칙

예 산 총 칙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제1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총 계		25,518,445,000	550,000,000
일 반 회 계		18,257,800,000	500,000,000
특 별 회 계		7,260,645,000	50,000,000
기타특별회계		6,319,475,000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845,700,000	
	(2) 교통사업특별회계	1,191,900,000	
	(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30,500,000	
	(4) 주택사업특별회계	1,340,600,000	
	(5) 도시개발특별회계	1,041,890,000	
	(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12,000,000	
	(7)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63,400,000	
	(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72,900,000	
	(9)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0,585,000	
공기업특별회계		941,170,000	50,000,000
	(10)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77,670,000	
	(11) 수도사업특별회계	763,500,000	50,000,000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15년도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회계 15,600,000천원
- (2)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70,000,000천원
- (3) 도시개발특별회계 20,000,000천원

제4조 2015년도 공채발행 및 차입금은 다음과 같다.

- (1)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620,000,000천원
- (2) 도시개발특별회계 6,600,000천원
- (3) 주택사업특별회계 100,400,000천원

제5조 2015년도 명시이월비 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와 같다.

제6조 2015년도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음.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5,939,219천원으로 한다.

- (1) 일반예비비 125,939,219천원
- (2) 목적예비비 20,000,000천원

제8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 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 (1)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 (2)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 (3) 재해대책 및 복구비

제9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